

형산강 하천 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6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형산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수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의 개발기본계획 중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환경부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경주시, 포항시) 또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2009. 04. 07 :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재정비)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79호)
- 2013. 05. 28 :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224호)
- 2021. 04.~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1. 06.~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14일간)(예정)
- 2021.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예정)
- 2021. 10. : 주민의견수렴(주민공람 및 설명회)(예정)
- 2022.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요청(예정)
- 2022.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예정)
- 2022. :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4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및 포항시 일원
- 규모(연장) : 36.00km
- 계획기간 : 2019.06 ~ 2022.05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표 1-2〉 계획하천의 개발기본계획 범위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연장(km)
형산강	국가	경상북도 경주시 울동 대천(지방) 합류점	경상북도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합류점	36.00

1.5 계획의 기대효과

- 하천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조성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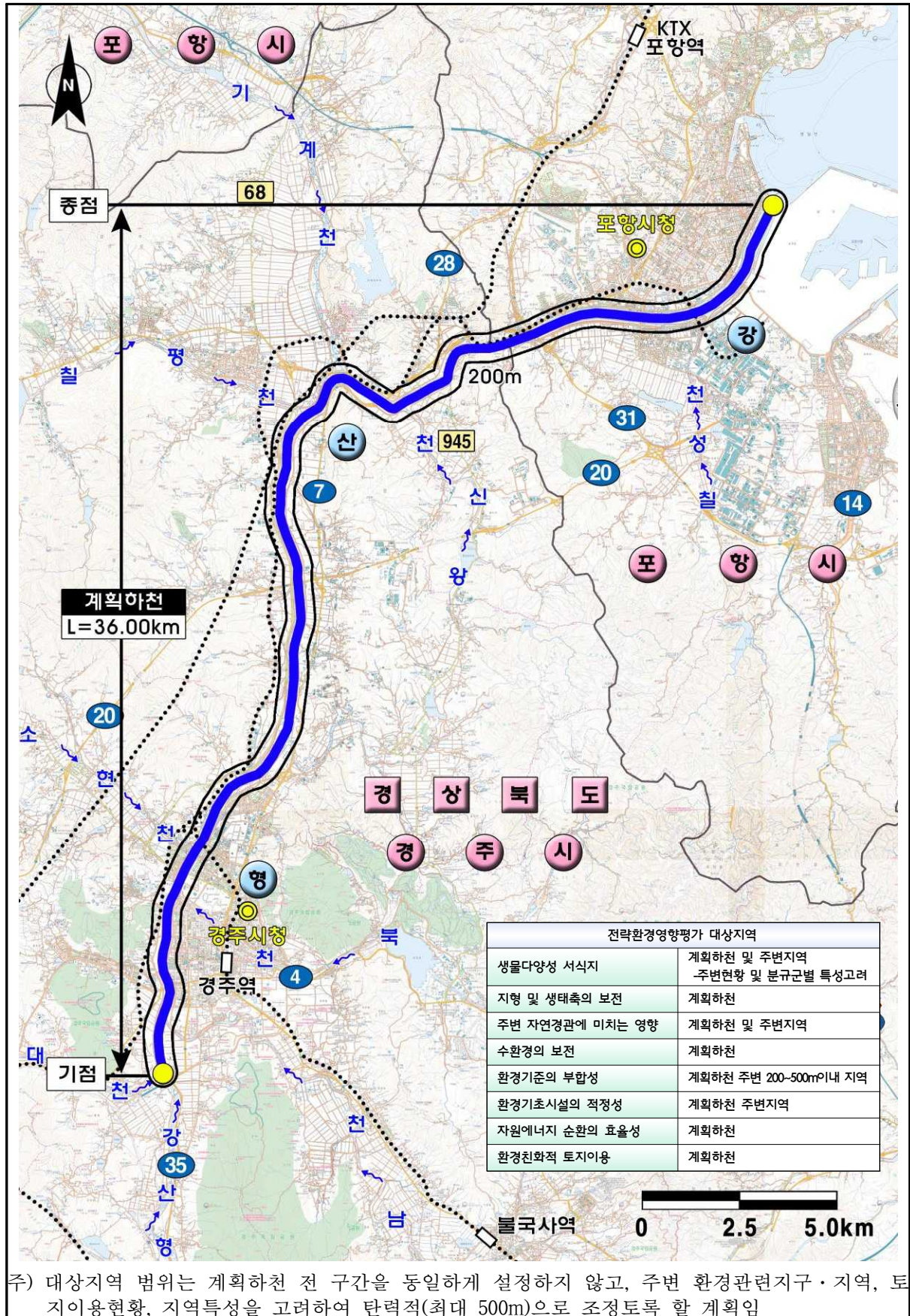
제 2 장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협의회심의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운영시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생 및 수변 식생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주변현황 및 분류군별 특성고려)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기본계획 구간 및 주변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시행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수질 등의 기초자료 활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계획시행으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지역	○ 계획하천 주변지역 (500m 이내)	공사시
		소음·진동	○ 계획시행으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계획하천 주변지역 (200m 이내)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수 및 폐기물 발생시설물 계획수립시 해당설치 계획지역	○ 계획하천 주변지역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폐유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시행으로 편입용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운영시		

주) 대상지역 범위는 계획하천 전 구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관련지구·지역, 토지이용현황,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최대 500m)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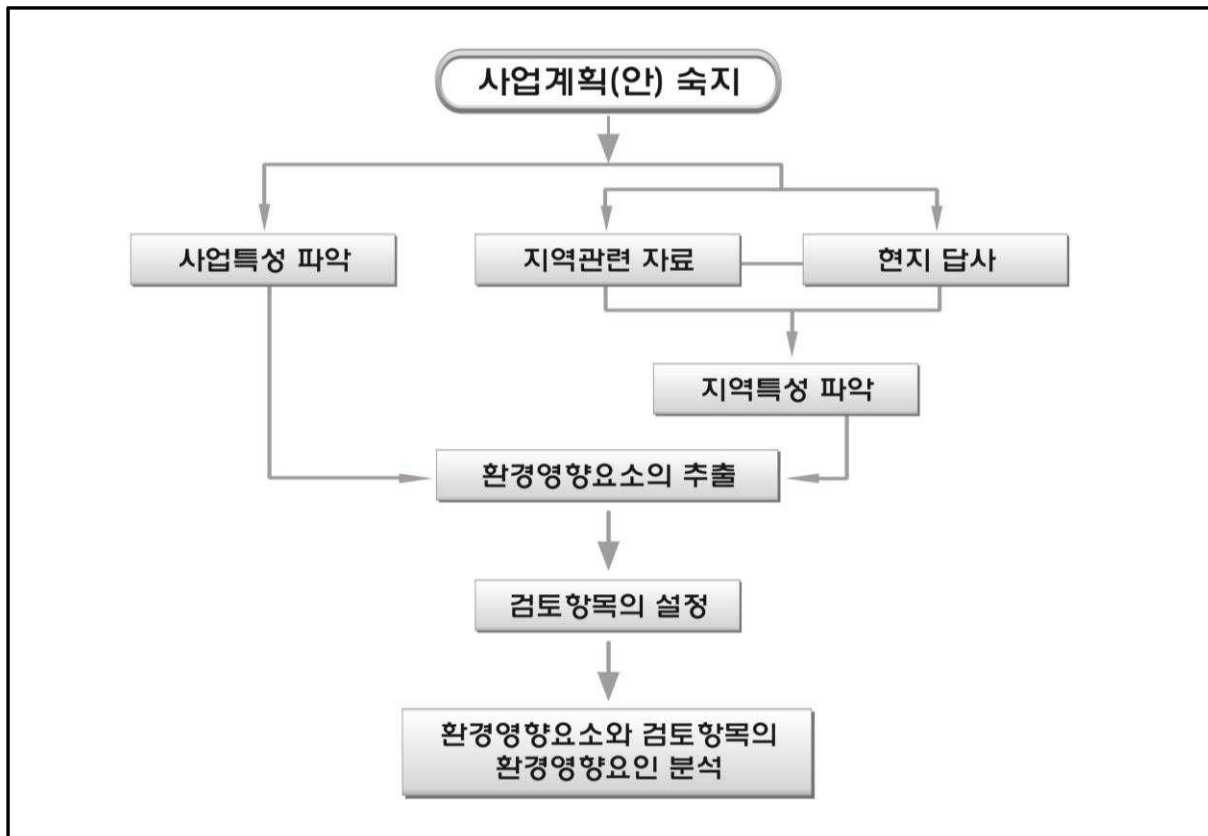
주) 대상지역 범위는 계획하천 전 구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관련지구·지역, 토지이용현황,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최대 500m)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임

(그림 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 3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환경 영향요소 추출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영향요인을 평가함
- 환경 영향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시와 시행시(공사시)로 구분하여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3) 평가항목 설정 흐름도

<표 3-1> 환경 영향요소 추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정비계획 시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특성 및 환경보전 관련 사항 · 유역내 오염원 현황 · 하천오염도 현황 · 수변 환경 및 생태환경 · 홍수처리, 하천유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기존시설물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 및 수변식물 훼손 · 하상 및 하도 변화 · 부지편입 및 지형변경 · 구조물공사(제방, 교량, 배수시설 등) · 공사장비 및 인부투입 · 하상굴착 및 운반

3.2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환경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등을 참조하여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함

〈표 3-2〉 평가항목 설정 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설 정	주요 검토내용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부합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과 주변지역 동·식물 서식지,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평가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평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향후 결정	·계획시행시 환경기초시설 등 현황 및 연계처리 평가 -운영시 오수 및 폐기물 발생시설물 계획 수립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공간환경관리계획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 오염원 등 주변지역 영향 범위, 협의회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범위 및 예측·분석 방법을 설정함

〈표 3-3〉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1)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예측·분석 방법	
계획의 적정성			·계획하천	·문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법정보호종 등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과악 -육상 및 육수 동·식물조사 : 2회 ·계획수립으로 인한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변화, 공법의 적절성 및 안정성 검토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과악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관심의대상	-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수질(2회) 및 저질(2회) 현황측정 -조사지점 : 12개 지점 (3km당 1개지점) -하천수질(31개 항목) : pH, BOD, COD, SS 등 -하천저질(13개 항목) : COD, T-N, T-P, 강열감량 등 ·하천정비로 인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와 예측	-

〈표 3-4〉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2)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예 측 · 분 석 방 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기상 등) 및 현지 조사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 설정 항목 조사 -대기질, 소음진동 현황측정 (3개지점 2회) -토양 : 주변 개발사업 평가서 및 환경부 측정망 등 ·분야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계획시행시 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현황 및 연계처리 방안 검토	오수 및 폐기물발생 시설 계획수립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계획시행시 폐기물, 분뇨 등 발생 및 처리방안 검토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하천(하천구역)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검토 ·공간환경관리계획 수립	-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표 4-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4.2.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4-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 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장(경주시, 포항시)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를 비치

4.3.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4.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자연공원법」에 의한 경주국립공원이 계획하천과 약 0.05km 이격되어 있으나, 계획하천내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평가대상지역 주민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은 별도 수렴하지 않을 계획임

4.5.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시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경주시, 포항시)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제 5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주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 심의기간 : 2021년 04월 26일 ~ 05월 25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표 5-1〉 심의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책	소속
위원장	김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국장	승인기관 (계획수립기관)
위원	안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과장	계획수립기관
	장00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협의기관
	배00	계명대학교	교수	민간전문가 (협의기관추천)
	이00	동아기술공사	상무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김00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팀장	지자체
	신00	경주시청 환경과	과장	
	신00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과장	
	윤00	경주시 주민대표	주민	주민대표
	이00	포항시 주민대표	연일읍 개발자문위원	
	이00	경주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경주대 환경공학과)	회장 (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추천)

5.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의 이·치수 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 회복 등 하천환경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영향이 없도록 고수부지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유역 특성 및 최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빈도를 설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로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획하천 상류지역에 경주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바, 자연경관영향심의 대상여부 검토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1. 05.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안 [redacted]</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주시 울동 대천(지방) 합류점 ~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합류점 ○ 규 모 : 총 연장 36.00km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p>1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 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민원해소 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함. <p>2 심의의견</p> <p>□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구간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 지역에 포함.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 대상 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 <p>□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하천의 규모, 자연성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 홍수빈도를 결정하고 홍수관리구역 설정 등의 다양한 대안 비교를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상 구간마다 각 지형적 특성 및 주변 현황에 맞도록 분류하여 체계적인 사업 시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되, 접근성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지구 설정 시 예상 사업 유형과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초안 작성 시 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 - 하천 합류부 및 생태적 연결성이 건강한 지역의 친수지구 설정을 지양하고 친수사업으로 인한 수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체로부터 충분한 완충구역을 확보하여야 함. ○ 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홍수위·하폭·제방 높이를 검토하여 통수 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을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자연성 유지가 필요한 구간은 최대한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을 지양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2 -</p>	<p>□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선정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하천개수와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하천홍수빈도 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p>□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설정</p> <p>1. 평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 여건,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구분·선정 <p>2. 평가범위·방법 등</p> <p>○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준비서 22쪽),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위치하므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해당 보호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조사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수정, 보완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따라 생태자연도 현황을 작성 - 문헌조사 시 “겨울철조류 동시센서스(환경부)”, “제4차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현지조사 시 평가범위는 500m 이상으로 설정(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서식지 및 활동범위까지) -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시기(식생, 식생, 포유류, 조류, 양사과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p style="text-align: center;">- 3 -</p>

<p>따라 실시(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중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하는 경우 (이적거리 제시), 영향 여부를 예측하고 보존방안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환경부 훈령 제1161호, '15.7.17) - 생태계교란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하상준설 등을 통한 일률적인 하상정비는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여유고를 확보하는 대체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식생활작 및 소형동물의 수생태계 접근성을 제약하는 호안공법(메트리스 돌방대, 옹벽블럭, 급경사 호안보축)은 지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과 주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수변 식생역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완사면의 식생 활착이 가능한 공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호안공사 지점의 유속 및 소류력 규모를 정밀 진단하여 목재계 및 식생계(식생매트 등) 환경사 호안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 홍수방어벽은 하천 횡단면상 수변부의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공법으로 생태적 연결성과 야생동물의 접근성을 제약하므로 지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확폭 확장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범정부호중 및 소형동물의 탈출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감방안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밀집지역 등 야생동물 회피지역은 설치하되, 산지농경지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간은 환경사의 친환경 호안공법·보축 등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 대기질, 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소 50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시된 항목 모두 측정·분석 (PM-2.5 포함) <p>○ 수질 및 수리·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철저한 수질조사 및 원인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현황조사를 통해 하천 수질 및 동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2회 이상 수질조사(갈수기·뽕수기·홍수기 등)를 실시하되, 조사 지점 및 횡수 등은 주변환경, 하천특성, 연장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시 규모(하폭, 유역면적 등) 및 인접 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률적인 하천홍수빈도 설정이 아닌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방 등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 및 과거 홍수 이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도한 하폭 확장(임야부 절토)은 지양하는 등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 수리시설을 파악하고 능력을 검토하여 과거 불필요하게 설치된 횡격시설물(보, 낙차공)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우선 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4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시설물 능력검토와 연계된 시설물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 없는 구간은 철거하고 신규 및 재가설은 지양(기준, 존치, 철거, 신설 계획 제시) - 하천저질 오염도 평가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연구 제687호, '15.11.16)」를 참조(항목, 기준치 등)하여 평가하여야 함. <p>○ 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예측하여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 <p>□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립 시 의견서 등은 제출자 본인 작성(대리작성 금지)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공람기간 20일 이상)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p>□ 기타</p> <p>○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 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p style="text-align: center;">- 5 -</p> <p>○ 환경 현황조사 시에는 법적 환경기준에 맞게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대기질, 수질(저질 포함), 토양, 소음·진동 등), 조사항목, 지점, 주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p> <p>○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p> <p>○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운영 지침(환경부, '12.10월)」 참조 ○ 동일 수계·영향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 과업[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으로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소 속 : 대구지방환경청 성 명 : 장 [REDACTED]</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7 -</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절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배서</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형산강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과도한 사업계획 수립(축제, 보, 낙차공 설치 등)은 지양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 <p>□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계획하천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는 바,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군별 걱정 조사지점, 조사시기를 선정하여 제시 - 법적보호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 500m 이내 경주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p><input type="radio"/> (수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및 운영시 하류수계(수변구역)에 수질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제시 <p><input type="radio"/> (수리·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이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 설계빈도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COVID-19로 인한 주민설명회시 비대면 방법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의견 적극 검토 반영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0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보전방안과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형산강이 위치한 지역은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고 사업 대상지역이 도심지와 가까우므로 대기질 영향 대상지역 범위설정 시 고려되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하천구간별 용도지구 지정의 필요성, 주변 현황과 하천 내 시설물 현황,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구(친수, 보전)를 지정하여 관리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치수안정도 및 치수사업 수요와 사업지구 현황, 관리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별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친수구역과 복원·보전구역을 구분하여 세부 치수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동·식물상 현황과악은 문헌조사로 발견되는 주요 야생생물의 생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의견 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자연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상위 공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위 환경계획에서 제시한 관리 목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2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김</p>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사업명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및 포항시 일원 [경주시 울동 대천(지방) 합류점 ~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합류점]
규모	36.00km
심의의견서	
<p>□ 총괄 의견</p> <p>- 자연생태계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면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p> <p>○ 사업대상지역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3. 대안</p> <p>○ 계획의 성격, 주변의 친환경적인 요소들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p> <p>○ 계획하천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별도보호지역에 대한 입지적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하천은 가급적 자연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p>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p>○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생활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항목을 중점평가 하여야 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평가서 초안공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p> <p>6. 기타의견</p> <p>○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대기·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p>	
2021. 05.	
심의위원 신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p>□ 총괄 의견</p> <p>○ 본 계획은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연일읍·송도동·해도동·상대동 주민들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영 등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p> <p>□ 심의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계획의 시행으로 인근 연일읍·송도동·해도동·상대동 등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포함하여 대상 지역 설정</p> <p>○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의 범위에 인근 주민 주거지역을 포함시킬 것(현재 200m 이내)</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토지이용계획 시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p> <p>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p>○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계획에 따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수생태계 훼손 및 오염, 대기오염, 비산먼지 등) 및 위험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p> <p>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p>○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및 소음진동 등 현황조사 및 방안 수립 시 연일읍·송도동·해도동·상대동 등 주거지역 영향권역을 포함 시킬 것</p> <p>○ 운영 시 기존 산림훼손 및 운영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감축방안 강구</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p>○ 주민 의견 수립 시 환경영향권역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세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p> <p>6. 기타</p> <p>○ 형산강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퇴적물 정밀조사사업(환경부) 결과를 반영한 하천복원 계획을 포함하여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할 것</p> <p>○ 형산강 일대(특히 하구)에 서식하는 수달(천연기념물), 조류 등의 서식지가 보존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p> <p>○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환경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여 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할 것</p> <p>○ 폐기물 적정처리 대책방안 강구할 것</p> <p>○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시 인근 주거지역, 학교, 농경지 및 주민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없도록 조차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p>	
2021. 5.	
심의위원 윤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p>□ 총괄 의견</p> <p>○ 앞으로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습적인 강우와 폭우로 인해서 형산강도 침수 및 제방의 유실의 등의 자연재해에서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제방보강과 펌프강건설시에 강우 빈도들 200년 이상을 감안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기존의 하천관련 계획은 단순히 치수의 목적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 주변을 주민 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 도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형산강의 가뭄에도 최소한의 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하다고 보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 세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형산강 주변토지이용은 강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는 디자인과 오염원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p> <p>3. 대안</p> <p>○ 주변토지이용시에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형산강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적정합니다.</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적정합니다.</p>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p>	
2021. 5.	
심의위원 윤 : [인]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강 하류 퇴적물 및 유강대교 하류 취수보에 의한 유수호름 정체에 따른 인근지역(유강리, 중명리) 침수대책 수립 필요 ○ 주변 도로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필요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임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방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해주시기 바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25.</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요소 추출을 제시하지 않았고, 평가항목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7가지를 선정하였지만 1가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항목은 설정하지 않고 향후 결정으로 하였음. 항목별 평가범위도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와 오염원 등 주변지역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200m)의 계획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분석방법에 사용된 구체적 기법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구상안에 대한 내용이 없고, 토지이용 구상도, 토지이용 계획표와 계획도 제시가 필요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의 종류와 선정은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을 대안으로 선정한 것과 대안선정 방법은 타당성 있고, 입지와 시기 순서는 미선정 사유를 적시함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요소 추출을 제시하지 않았고, 평가항목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7가지를 선정하였지만 1가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항목은 설정하지 않고 향후 결정으로 하였음. 항목별 평가범위도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와 오염원 등 주변지역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평가 예측 분석방법도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등 타당성이 있게 제시되었음.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p>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평가 절차 대상검토 결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17.</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p>	<p style="text-align: center;">- 공 란 -</p>